



ที่ พณ ๐๓๐๙.๐๙/ว ๑๗๑



ถึง สภาอุตสาหกรรมแห่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

กรมการค้าต่างประเทศขอแจ้งประกาศ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ยุทธศาสตร์และการคลัง สาธารณรัฐเกาหลี (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: MOSF) ลงวันที่ ๒๖ เมษายน ๒๕๖๗ เรื่อง เปิดทบทวนการต่ออายุ การใช้มาตรการตอบโต้การทุ่มตลาด (Anti - Dumping: AD) กับสินค้า Oriented Polypropylene Film (OPP Film) ที่มีแหล่งกำเนิดจากสาธารณรัฐประชาชนจีน สาธารณรัฐอินโดนีเซีย และ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ทั้งนี้ สามารถ ดาวน์โหลดรายละเอียดประกาศดังกล่าวได้ตาม QR Code ที่แนบ มาเพื่อทราบ และแจ้งสมาชิกให้ทราบโดย ทัวกัน



กองปกป้องและตอบโต้ทางการค้า

โทร ๐๒ ๕๔๗ ๔๗๓๘

โทรสาร ๐๒ ๕๔๗ ๔๗๔๑



## ◎기획재정부공고 제2024-107호

(주)필맥스, (주)화승케미칼, (주)삼영, 제이케이머티리얼즈(주)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·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해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.

2024년 04월 26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### 중국·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

#### 1. 재심사 요청 개요

가. 요청인 : (주)필맥스, (주)화승케미칼, (주)삼영, 제이케이머티리얼즈(주)

나. 요청일자 : 2024년 2월 20일

다. 요청대상물품

- 중국·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중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( $\mu\text{m}$ ) 이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 제747호(2019.8.23.)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

라.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

-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(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)

#### 2. 재심사의 주요사항

가. 재심사대상물품 : 요청대상물품과 동일

나. 재심사사항 :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

다. 재심사대상공급자

- 중국 :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
  - 슈강(Jiangsu Shukang Packing Material Co., Ltd.) 및 그 관계사
  - 데크로 (Guangdong Decro Package Films Co., Ltd.) 및 그 관계사
  - 귀평(Anhui Guofeng Plastic Industry Co., Ltd.)
  - 종산(Zhongshan New Asia Adhesive Products Co., Ltd.)
  - 킨리드(Zhejiang Kinlead Innovative Materials Co., Ltd.) 및 그 관계사
  - 쿤린(Suzhou Kunlene Film Industries Co., Ltd.) 및 그 관계사
- 인도네시아 :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
  - 인도폴리(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.)

· 아르가(PT Argha Karya Prima Industry Tbk.)

· 트리아스(PT Trias Sentosa Tbk.)

- 태국 :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

· 타이필름(Thai Film Industries Public Co., Ltd.)

· 에이제이피(A.J. Plast Public Co., Ltd.)

※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,  
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

라. 조사기관 : 무역위원회

마. 재심사대상기간

-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: 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

다만,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

-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: 2020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

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

### 3. 재심사절차 진행계획

가. 재심사 개시일 : 2024년 4월 26일

나. 재심사 조사기간 :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

(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)

다.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: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※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 
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

### 4. 기타행정사항

- 재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 
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에 참여할 것을 무역위원회 {덤핑부문은 덤핑조사과  
(044-203-5874),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(044-203-5861)}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본 재심사와 관련한 문의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관련기관	연락처	비고
기획재정부 (산업관세과)	세종시 도움6로 42 (전화) 044-215-4432, (FAX) 044-215-8076	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
무역위원회 (산업피해조사과)	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(전화) 044-203-5861, (FAX) 044-203-4815	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
무역위원회 (덤핑조사과)	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(전화) 044-203-5874, (FAX) 044-203-4813	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